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0.

발 의 자 : 황 희 · 안규백 · 이훈기
한민수 · 이병진 · 최기상
한정애 · 손명수 · 박용갑
박수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입주 시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함. 또한,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. 그러나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가 지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, 2023년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어 농업·임업·어업, 광업, 제조업 시설, 사행행위영업시설, 주택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입주 가능하게 되었음. 그러나 실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는 별도로 입주대상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달성되지

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한편,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시 현장실사를 거쳐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를 개선·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시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제3항 후단 신설).

나.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(안 제33조제7항제2호 후단 신설).

다.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등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입주계약 체결, 임대사업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(안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제3호·제39조제1항 단서 신설).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33조제7항제2호 중 “사항”을 “사항.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28조의5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8조제1항 단서 중 “대통령령으로”를 “산업시설구역등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”로 한다.

제38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지식산업센터 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

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산업시설구역등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) ①·② (생략)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 ④ (생략) 제33조(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⑥ (생략) 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<후단 신설>	제15조(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<u>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u> ④ (현행과 같음) 제33조(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<u>사항. 이 경우 제28조의5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여</u>

3. ~ 6. (생략)

⑧ ~ ⑬ (생략)

제38조(입주계약 등) ① 산업단지
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
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
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
입주에 관한 계약(이하 “입주
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하여야
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다.

② ~ ④ (생략)

제38조의2(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)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(지원기관과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)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

서는 아니 된다.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⑧ ~ ⑬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입주계약 등) ① -----

-----.

-----산업시설구역등
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입
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38조의2(산업단지에서의 임대
사업 등) ① -----

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② ~ ⑧ (생략)

제39조(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)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(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)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.

<단서 신설>

1. 2. (생략)

-----.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지식산업센터 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) ① -----

-----.

다만, 산업시설구역등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